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73호 2024년 12월 13일(금)

조 례

-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3
-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공 고

- 보상계획 (열람) 공고 8
-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11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8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15

발행 : 시 민 소 통 과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129호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130호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조치)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131호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피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도박중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
2. 도박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3.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피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2.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
3. 사회복지시설·단체
4. 관련 공공기관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시행·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2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속 초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22호선)
- 명 칭: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78, 502호(고운동, 세종 스마트큐브Ⅱ)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0. 31.

마.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금회 시행	기시행				
도로	중로	1	26	20~26	주간선	1,154	970	184	교동620-37 (중1-1)	교동784-37 (중1-1)	건설부고시 제37호 (1976. 3. 27.)	법면 포함
도로	중로	3	22	12~15	보조 간선	110	110	-	속초시 금호동 617-48	속초시 금호동 601-2	속초시 고시 제2020-53호 (2020. 4. 10.)	법면 포함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세부내역 별지 참조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속초시 금호동	614-19, 614-44, 614-55, 614-56, 614-60, 615-2, 615-4, 615-5
	속초시 교동	618, 618-2, 618-11, 618-17, 산290-11
사용 토지	속초시 금호동	614-19, 614-44, 614-48, 614-55, 614-56, 614-58, 617-19, 617-23, 617-24, 617-25, 617-26, 산275-13
	속초시 교동	618, 618-2, 618-4, 618-10, 618-11, 618-13, 781-23, 1027, 산290-9, 산290-11
물건	위 토지 상에 지장물 등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 속초시 고시 제2024-135호로 고시된 토지 및 그 위에 설치된 물건 등과 권리 일체

나. 토지 등의 상세내역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같은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12. 13. ~ 2024. 12. 29.(공고일로부터 16일간)

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 영랑공원개발 사무소(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57-1, 더샵속초프라임뷰 모델하우스 2층, ☎ 033-631-9633)
- 시 청: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 033-639-2803)

다. 이의신청: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산정

나. 보상의 시기 : 보상액 산정 완료시 보상협의 요청(보상계획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보상액 산정하여 개별통보)

다. 보상액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 후 현금지급(계좌입금)
- 물건(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경우 해당 토지 보상 이후 또는 동시

라. 보상의 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공탁)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되,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앞뒤면 사본 1부 첨부)

☞ 감정평가추천서 업체명, 감정평가사 등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을 명기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조서에 편입된 내역이라도 추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보상금액, 계약절차,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라.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를 기준으로 공고하며, 열람기간 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보상사무소 (☎033-631-9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 12. 13.

속 초 시 장

1. 대상자연유산

종목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대

2. 조정사유

- 자연유산의 유형 및 특성과 천연보호구역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조정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4. 12. 13. ~ 2025. 1. 1.(20일간)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속초시청(문화체육과) 협의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국가유산청(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허가 처리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5년 1월 1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방 문: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국가유산팀
 - 우 편: 우)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국가유산팀)
- ※ 문의처: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국가유산팀 담당자
(☎033-639-2958)

- 붙임 1.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1. 천연기념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p>도면</p>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p> <p>강원도 인제군 복면 한계리 1 외</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정유산 연속지역 100 ~ 300(m) 허용기준구역 3구역 <p>축척 1:75,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p>
<p>구분</p>	<p>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p>
<p>3구역</p>	<p>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및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p>
<p>공통사항</p>	<p>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p> <p>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p> <p>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표면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이내)은 제외)</p> <p>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p>

<붙임 2>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법인, 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제출자 : (인)

속초시장 귀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8공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174호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8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합니다.

2024. 12. 16.

속 초 시 장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제8공구
- 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사업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원암리·인흥리·성천리,
속초시 장사동·노학동·조양동 일원

2. 보상주체 및 보상대상

- 보상주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보상대상: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보상대상(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토지는 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교동 668-32)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열람기간: 2024. 12. 16.~2025. 1. 8.(09:00~18:00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4.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 또는 국가철도공단 강원 본부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통지 한 우편물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2025년 6월)
 - 2025년 5월중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지역인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각 1인
 -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 재결(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 공탁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현금)을 예금계좌로 입금
(단,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 소요일이 필요함)

6. 기타 사항

-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편입면적, 지번 등은 지적 분할 및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상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상계획 열람 종료 후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 토지보상부 담당자(☎ 033-810-5189, 518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사무실(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비치